

■ 최신 해외정보 - 일본 ■

민법개정안 중의원 통과

주로 채권(債權) 관계 규정을 위주로 한 민법개정안이 2017년 4월 14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채권 부분에 대한 개정은 민법제정 이래 약 1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제정 이래 약 120년간의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고 민법을 국민 일반에게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관점에서 마련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의 통일화 등 시효에 관한 규정 정비, 법정이율을 변동시키는 규정의 신설, 보증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 정비, 정형약관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의사의 진료에 관한 채권은 3년, 음식점의 음식료에 관한 채권은 1년 등 단기소멸시효의 특례를 모두 폐지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통일화를 도모하는 등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2. 법정이율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한 후 시중 금리 동향에 따라 변동하는 제도를 도입함

3. 보증채무

사업용 용자채무의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일 경우(주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 그 이사, 취체역 등인 경우를 제외함)에는 공증인이 보증 의사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

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등 보증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4. 정형약관

정형약관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보충되기 위한 요건 외에 정형약관을 준비한 자가 거래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형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요건 등 불특정다수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정형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정형약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5. 기타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사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 장래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 것,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를 지되, 통상적인 사용수익에 의해 발생한 감모 등에 대해서는 그 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확립한 판례 법리 등을 명문화 함

6. 시행기일

이 법률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령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함

[자료 :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참조]